

제426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3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70)

상정된 안건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15) 2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2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2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98) 2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70) 2

(15시44분 개의)

○소위원장 임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특위 법안소위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5개 특별법안에 대한 총괄적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별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개괄적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 임상섭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천재호 심의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원래 기재부차관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추경소위 관계로 제가 대참하게 됐습니다.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 김광용입니다.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여튼 궁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임상섭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임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초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원 그리고 산불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회와 현장에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앞으로 있을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잘 심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특별법안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5시) 47분

○**소위원장 임미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심사 들어가기 전에 1분만 기회를 주시면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상관이 없고 세 분, 3개 부처가 왔으니까 현안 관련돼서 산불 이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아, 산불 이것 논의 다 끝난 다음에요?

○**김형동 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렵니까?

○**김형동 위원**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아마 특위 준비되고 많은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또 각 의원실에 산불 이후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특히 재난안전본부장님은 저하고 조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안은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꽤 장래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임시주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업체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임시주택이 더위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더위에 취약해서, 거기에 거하시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80, 90, 어떤 분들은 노부부가 계신데 한 분은 편찮으신 분도 있고 침상 생활을 하시거든요.

요구드리는 것은 삼사천 채에 달하는 임시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거주환경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폭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것은 한번 더 점검해야 되고, 차양막부터 해서 그늘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거기 계란프라이도 될 겁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면. 에어컨 틀고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그 뼈야별에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럴 때 꼭 호우나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더라고요. 우리 정부나 국회가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불난 자리에 다시 물난리가 나 가지고 인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꼭, 이것을 검토하지만 특위 차원에서 꼭 챙겨 봐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소위원장 임미애** 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 지금 담당 과장이 현장에 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쿨루프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속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지금 물 빠짐 이런 것들 문제 되는 것들도 조치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 안 되도록 저희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위원** 어떤 데 가면 주거단지가 임시로 이삼십 채도 있고 적개는 열 채 전후가 있는데 어떤 데는 호스가, 수도관이 야외에 빠져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어요. 하다못해 수도관이 빠져 나와 있으면 분무기 해 가지고 지붕에 뿌리면 되거든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김형동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생긴 부분일 수 있는데 업체마다 그리고 임시주거 동마다 주거환경이 너무 차이가 크다. 비근한 예로 제가 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게 자자체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그런 아주 소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자치단체 일 정부 일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치단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왕 이야기가 진행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안전 법안심사하기 전에 산림청장님, 지금 김형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우기가 다가와서 산사태 기간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기간 전에 저희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응급조치는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대신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지만 산불피해지 중에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연말까지 항구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안심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검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해서 산불 발생 현황과 피해 현황, 정부 대응과 피해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제정안들은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수습과 지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신중검토 입장이었으나 지난 6월 특별법 상정 후 적극 검토하겠다

는 입장으로 입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5쪽 하단을 보시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있고 재정 지원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6쪽 중단에 보시면 이재민 개념 확대라든지 지원의 사각지대 확인 필요성 등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위원회입니다.

배상·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안과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두는 안이 있습니다.

둘째는 피해 주민과 피해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8페이지, 셋째입니다.

피해지역 재건과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을 위한 내용을 별도로 두는 제정안들이 있습니다.

넷째로 일부 제정안들은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지원 등 그리고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등 재정상 특례와 행정상 특례규정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자 배상 및 위로금 지원에 집중하는 안이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 재건에 중점을 두는 안,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강조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다음,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5건의 제정안은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거나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인데, 우선피해지역 지원 규정과 관련해서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이미 지원됐거나 앞으로 지원될 정부 계획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응역량 강화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재난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일반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의견……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총괄적 의견을 일단 우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지난 산불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요. 지난 추경을 통해서 3.3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고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도 지원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추가 말씀이 있어서 특별법 조문별로 논의할 때 각론에 들어가서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행정안전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도 법 제정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똑같은 취지입니다만 저희가 복구계획을 통해서 기존의 재난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확대된 지원을 했고, 두 번째로는 재난법 개정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구계획은 별도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民間에서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 1700억 정도가 배분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 지원에서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 개별적인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때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혹시 산림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법안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피해지역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불 대응 제도개선은 이 피해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통일된, 적용돼야 될 내용들이 있고 또 산림재난방지법이라는 일반법에서 충분히 개정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꼭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산림재난방지법과의 정합성을 좀 따져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피해지역에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따로 의견 있으신가요?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제가 의원님들께서 내신 5개 법안을 검토를 해 보면 첫 번째,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복구·재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아까 산림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산불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경북이나 경남, 울산의 이런 특수한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농해수위랑 행안위랑 다 같이 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일반법 개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 중에, 저도 그냥 급해서 여기 이렇게 담아 왔는데요. 제 법안에도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이번에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이 법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의견이 더 없으시면 저희가 개별 조문별 검토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문별 검토를 전체적으로 먼저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또 각각 토론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개별 조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조문별 검토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목적입니다.

표를 보시면 표 하단의 목적에 피해지역 안정과 회복을 규정하는 안이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 추가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정의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첫 번째로 초대형산불의 정의는 지역적 범위에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 외에 다른 지역을 추가할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16쪽,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대형산불로 신체·재산·심리 등 피해를 입은 자로 간략하게 규정하는 안이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근로활동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지역재건, 산불고위험지구, 채취 임산물, 산업단지, 임시주거시설, 산불폐기물, 복합기능직접지구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3번 적용범위입니다.

조 제목은 적용범위이지만 적용대상을 규정한 것입니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대형산불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법인·단체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4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책무로서 종합시책 수립·시행과 예산 조치 등을 규정하는 안이 있고 피해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구체화된 내용까지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안과 다른 법률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까지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 내용으로 배·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과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종합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다음 27쪽 손실보상금은 초대형산불과 관련한 구조, 수습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8번은 배상금, 보상금, 지원금 관련된 규정입니다.

산불 피해에 대한 보전을 배상금, 보상금, 지원금 중에서 어느 형태로 지급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금 관련해서 특징적인 사항으로서 김태선·이만희 의원안 제1항제2호를 보시면 국가가 진정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10번은 위원회에 사실조사 및 의견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5쪽, 11번은 보상금의 지급신청, 의견청취, 지급결정 등 절차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은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임시지급금과 지급결정액의 정산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2쪽입니다.

13번은 국가 등의 지원원칙으로 피해자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 지원할 의무 그리고 피해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피해유형을 개인피해, 사업피해, 산업피해, 고용피해, 공동체피해로 분류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14번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번은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을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는 안과 추상적 의무만 제시하는 안이 있습니다.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6번은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쪽, 17번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금으로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비지원금, 장례비지원금 등을 규정하고 지원금 특례로 압류 등 금지, 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미산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규정하는 안과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생계 및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을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로서 주택복구 또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0쪽 표를 봐 주시면 주거시설 복구지원 특례로서 복구비에 대하여 국고 70% 이상 지

원 의무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부담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조성 근거, 조성 시 고려사항과 공동주택단지 건축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9번은 국가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재산피해 복구 비용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안과 추가적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 의무까지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번은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와 공장 복구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첨단기술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3쪽, 21번 농림어업 분야 특별지원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수산업에 대한 시설·장비 등의 피해복구비용을 국가 등으로 하여금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22번은 대형산불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7쪽입니다.

23번은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에게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24번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등에게 금융기관 등에 대한 협조 권한만 부여하는 안과 요청을 받은 기관에게 적절한 금융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안이 있습니다.

81쪽, 25번입니다.

출입국 특례인데 피해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26번은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과 피해지역 기업에 국세·지방세 감면을 부여하고 피해지역에 창업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27번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피해지역의 법정 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지원할 때 국고보조율 상향 등 특례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대상 법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89쪽, 28번입니다.

국가 등이 피해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의무 그리고 국가의 정신질환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안이 있고 재량사항으

로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9번은 근로자의 치유휴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휴직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94쪽입니다.

30번은 공동체 회복 관련된 사항인데 국가 등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지역 지자체가 공동체 복합시설과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31번 추모사업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추모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추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설치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100페이지, 32번입니다.

공무수행사망자 특례 인정 및 지원 사항인데, 초대형산불의 진화작업 등의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민간인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당 민간인들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공무수행사망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안도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3번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면적 기준과 타당성 평가 적지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34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지역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국가 지원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35번은 국가로 하여금 피해지역 내에 있는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기준과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36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37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불 예방 및 진화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피해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8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불고위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지구에 국가가 인력, 시설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39번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입니다.

국가에 인공지능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에는 주민경보체계 마련·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40번은 지자체에 대하여 생활권 중심의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41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불대응체계 혁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15쪽, 42번은 산불진화 장비·시설 등 지원과 대응장비·인프라 확충에 관한 내용으로 그 내용 중에는 남부권 국립 산불방지센터 경남지역 설립 등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43번은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44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불 또는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방댐 설치 및 완충지대 조성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45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주민 산불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46번은 지자체로 하여금 산불·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 초기 대응을 위한 마을순찰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47번은 국가로 하여금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48번은 산불폐기물 처리·복구 비용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24쪽입니다.

49번 위험목 제거 사업인데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산불·산사태 등 피해지역의 위험목 제거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50번도 유사하게 산불·산사태 피해지역 내 임도를 설치할 때 산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51번은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지역에서 산림경영특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52번은 산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사항인데 지자체 스스로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인허가 의제 처리,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53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불재난지역 내에서 공동영농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54번인데요. 지자체로 하여금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지역 개발 시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산림회복 사업에 특교세와 균특회계를 통한 재원 보장 의무 등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55번은 표를 보시면 임업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 산림소득 분야 보조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법에도 불구하고 송이 등 채취 임산물에 대한 보상금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56번입니다.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137쪽, 57번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139쪽, 58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지역 복구·재건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고 피해 지역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59번은 피해지역 산림의 관리·정비·개발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60번 관광 개발입니다.

피해지역에서 관광단지 지정 요건의 면적·투자·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47쪽, 61번입니다.

61번은 표를 보시면 피해지역의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62번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49쪽입니다.

63번은 표를 보시면 한시적으로 피해지역 내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도시계획, 특별재생, 지역개발 등 사업 관련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64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60쪽, 65번은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이고요.

161쪽, 66번은 국가 등이 배·보상금과 피해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162쪽, 67번은 특별법에서 기존의 법령에 따른 지원보다 확대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지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중복 수령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164쪽입니다.

68번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 그리고 자격사칭 금지 의무와 위반 시 별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69번은 특별법에 따라 발생할 권리의 압류 등의 금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차오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71번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지자체의 장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대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72번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안과 6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는 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게 제정법이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검토의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되고 나면 특별수당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별 조문에 대해서 쭉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개별 조문을 일부라도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건 좀 정리하고서 넘어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전체적으로 의견 개진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제가 지금 이석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를 보면서 이 특별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복구하는 부분만 할 건지 아니면 특별법 전체에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을 다 포함시킬 건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조문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특별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어쨌든 산불 난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건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의 성격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목적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위원님들?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문을 하나씩 검토를 해 나가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논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문별로 찬반을 해야 되고, 또 정부 의견과 위원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각 5개 법안을 제출한 내용도 상이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조문을 가지고 어쩌면 1시간 이상도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고 정부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법조문들이. 이견이 없는 법조문들은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어렵겠지만 다섯 분의 법안을 한 조문으로 축조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아마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불필요한 토론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부 의견과 검토의견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에 따라서 조문을 만드시고, 또 정부 내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의견 부분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부분도 있고 또 수정해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 삭제하자는 부분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면 되고, 수정된 의견이 있는 부분은 수정된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조문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정부안에서.

그러면 3개의 조문을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하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조문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면 아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점도 흐려질뿐더러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또 앞뒤 체계도 혼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기일을 잡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다 한 번 쭉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조문이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어렵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종합 검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구·재건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복구는 지원 부분과 재건에서는 권한이양이 집중으로 법에 들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산불대응체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논의를 해서, 이 특별법의 특수성 8개 시군에 한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 대응체계는 일반법에서 우리가 다 같이 국회와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그런, 여기 이 산불에 해당되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산불대응체계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저도 법에서 철회를 하고 전문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숙의를, 위원님들께서 숙의를 해 보고 이 부분은 따로 떼서 특별법에서는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의견을 내 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게 지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달희 위원님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천호 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일단 이 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적용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그다음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과 정의, 피해지역 그리고 적용 범위,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지금 정부 측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6번 사항부터 의견을 조금씩 차이를 드러내고 조정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번까지는 오늘 논의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게 그래도, 모이기 어려운데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문별 검토의 1번 목적부터, 목적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다섯 분의 의원들이 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의견도 한번 지금 살펴보시고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정부 의견 중에서 산림청장이 대표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적에 대해서?

○**소위원장 임미애** 예, 말씀하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여기 다섯 의원님들이 약간씩 다른데 지금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불 대응역량과 관련돼’를 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보면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거의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임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김해시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에만 한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이 법에 해당 지역으로 목적을 분명하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달희 위원** 지역은 있는데 지원과 복구·재건 사업이 목적에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산림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에 치중을 하는데 거기에 복구와 재건 사업에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그 내용하고요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 피해지역에 대한 내용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참고로 이만희 의원님의 목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며’ 여기까지라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복구 내용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인구소멸지역에서 4000가구 가까이가 타고 정말 많은 산에 불이 났는데 회복은 그냥 지금 산불 난 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복구와 재건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이 지역이 거듭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적 안에 복구와 재건이라는 얘기가, 이 단어가 좀 수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구와 재건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 뒤의 내용에 예를 들어서 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달희 위원 그건 아까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거고요. 재건에 대한 거는 산불 난 지역 안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지자체장들에게 권한을 줘서 특별한 재건, 빠른 복구를 위한 투자 유치라든가 그런 걸 좀 해 보자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목적에서는 ‘지역경제 회복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환경 혁신과 공동체 기반 재구성을 통해 피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 특별법에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지원만 한다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차 긴급지원은 이미 돼서 이 특별법의 존재의 가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전문위원님, 지원 복구 재건 3개의 용어를 같이 정리해서, 이게 쟁점이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예.

○김형동 위원 이걸 잘 구분하고 빌라내야 되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소방 체계의 틀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특위가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것 동의하실 것 같고.

또 이 법이 특별법이고 법률 안에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게 상당한 일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냥 지원하고 마무리한다는 정도의 취지라면 현행 법제도 안에서 추경을 얹어 주든지 이 정도로 되는 거지 아까 재건 플러스해서 그런 느낌까지 집어넣으려면, 특별법에 부합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가 한계를 짓는 거는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를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정부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상당 부분 복구와 재건 그리고 어떻게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생기 활기가 띠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 뒤의 조문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뒤에 보면 SOC나 임도의 문제나 그다음에 특성화 마을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법문에 담으려면 목적에 어느 정도는 열어 놓고 해야, 혹시 모르겠는데 한 번 돌았을 때 그래도 목적이 좀 크다 너무 넓다 하면 그때 한 번 더 조율해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 복구 재건 이 3개의 키워드가 모두 다 담기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이 있으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은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다음에 혹시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시면 두 번째, 정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이것도 산림청장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형산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하동군까지 김해시는 빼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해하고 옥천하고 무주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들은 이번 초대형산불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내용이 이달희 의원님하고 이만희 의원님의 정의 중에 김해시만 빼지면 지금 정부 측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지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이란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건 이달희 의원님의 조문과 내용이 같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달희 의원님의 2조(정의) 내용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특별히 없으면 정부 측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김태선 의원님 안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포괄적이고. 대신 거기에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이라고 이렇게 조금 사족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앞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울산·경북·경남이라는 말을 빼고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이달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보느라고.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은 기타입니다.

4번인데요. 이건 개념, 그러니까 정의를 각각 해 놓은 거여서 사실은 다른 건 크게 없

는데 지금 정부 측 의견으로는 이달희 의원님 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주신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역재건 관련해서는 이달희 의원님 안이 맞는 것 같고요. 산불고위험지구라는 말은 사실은 기존에 제정돼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 법에서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그다음 페이지에 채취 임산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채취 임산물은 제34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에서 한 번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 조항에 가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 경제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이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2조(정의)보다는 34조에 가서 정의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달희 위원** 이게 지금 산불고위험지구, 그러니까 산불대응체계에 대해서 담아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법으로 뺄 것인지 그 부분을 산림청장님 정확하게……

○**산림청장 임상섭** 산불고위험……

○**이달희 위원** 이 내용과의, 넣으면 뒤엣것하고……

○**산림청장 임상섭** 연계가 있는데요.

○**이달희 위원** 연계가 있어요. 그 뒤엣것을 뺄 것 같으면 여기도 같이 빼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청장 임상섭** 빼도 되는데요 산불고위험지역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문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위험지구는 산림재난방지법의 제17조의 내용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행안부 재난본부장입니다.

임시주거시설 관련해서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재해구호법령에 일반적으로 임시주거시설이라는 게 정의가 돼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이건 뒤의 임시주거시설에, 겨울 되면 춥기도 한데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타 개념에 넣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가 재해구호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쓰는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법령에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개념이 달라지면 저희들 업무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통일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

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일반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특별법에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개 시군에 있는 임시주거시설과 일반재난 났을 때의 임시주거시설을 분리해서, 이번에 산불로 인한 임시주거시설은 특별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임시주거시설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달희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실무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정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시오.

이게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임시주거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박형수 의원님 안, 이만희 의원님 안, 이달희 의원님 안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희 의원님 안을 보면 ‘임시주거시설이란 초대형산불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로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조금 여지를 주셔서 이 정도의 개념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주거시설과 관련된 정의는 이달희 의원님의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다 정리가 됐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적용범위입니다.

박형수 의원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적용범위와 관련된 조문을 주셨는데요.

의견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재금 참고로 3조(적용범위)는 정의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여 가지고요 여기에서 취하실 내용이 있다면……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네요.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정리해서 이것을 정의 부분에다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이나 12·29여객기 피해지원법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보면 국가·지자체 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시행, 예산상의 조치, 피해자·피해지역의 의견수렴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특별법안도 정리를 해 보면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된다 하면 의원님 다섯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괄하면서 입법례도……

○**소위원장 임미애** 이만희 의원님의 안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단 이게 있습니다. 아까 2항에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서천호 위원**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법이 아니라서.

○**소위원장 임미애** 해야 한다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소위원장 임미애**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다른 데, 여기 지금 저희가 낸 법안에 보면 모두 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해야 한다로 한다면 가능하면 앞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를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형동 위원** 사족 아닙니까?

○**이달희 위원** 아니, 아니야. 법에 따라 예산이 따라와야지 예산 따라 법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의견 주시면 됩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지금 3개로 정리하는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저의 네 번째 항목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기재부 실장님 말씀이 ‘예산의 범위하에서’ 이러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엣것은 빼고 그냥 뒷 조문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어차피 예산을 정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넘어가게 됐을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산출해 가지고 규모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어차피 예산이 지금 예비비로까지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번에 만약 넘어가면 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특별법의 경우 책무는 모두 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4·16세월호참

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비추어 본다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허성무 위원 예산 범위 내라는 말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이렇게 그럼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 취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다라는 내용인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특별법이니까 너무나 당연한데요.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의견도……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안하고 이만희 의원님 안에는 우선한다는 것에 더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문단에서 그거를 후단에 신설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님이나 이달희 의원님의 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이만희 의원님.

○소위원장 임미애 이만희 의원님 안으로요? 조금 다른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 이달희 의원님도 마찬가지……

○소위원장 임미애 같아요, 보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달희 위원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법의 큰 골격은 하나 잡아 놓습니다.

그다음에 쟁점이 되는 게 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을 조금 정리해서 다음번 법안소위 할 때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사항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사실 그저께 이 땅별에 경북의 4개 시군의 농민들 그리고 임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운데 용산 앞에서 그리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본인들의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와서 크게 성토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이 더위에 우리 피해지역 8개 시군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이 법 제정을 좀 빨리 추진해서 본회의에 빨리 좀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외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형동 박정현 서천호 이달희 임미애 허성무

○청가 위원(1인)

이원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사회재난대응국장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산림청

청장 임상섭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